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2015년 10월 pp.9~38
한국세무학회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심으로 -

최기호* · 문예영**

— <요 약>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업의 당기소득 중 일정한 수준을 인건비, 투자 및 배당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내유보를 과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내유보과세는 도입전 첨예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과세방법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내유보과세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연도소득 추정치를 이용하여 4가지의 시나리오별로 각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별 기업의 세부담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I에서는 4년간 584개 기업·연도에 총 7,130억원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1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 IV에서는 4년간 1,212개 기업·연도에서 총 2조8천7백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23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세대상 기업 중 10대 그룹의 비중은 38.6~4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히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업종별로 편중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을 살펴본 결과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들이 시나리오 I 하에서 평균 10억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사내유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추가배당을 해야 되므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관계회사의 거래 또는 기간별 소득이전 등을 통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최대주주, 기관주주 및 외국인주주 등의 지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으로 기업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기소득에 국외소득을 포함한다면 국외투자를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내소득에 대해서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cgh@uos.ac.kr, 주저자

** 배화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조교수, yymoon@baewha.ac.kr, 교신저자

만 과세한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국내소득을 국외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가 역시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보완하여 자유롭게 동업자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면 동업기업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내유보과세 도입시 기업들의 세무상 자료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기업들의 세부담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세대상 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내유보과세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 평가를 하여, 사내유보과세제도의 도입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동 제도의 시행효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사내유보과세, 상호출자제한집단

I. 머리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향후 기업의 당기소득 중 일정한 수준을 인건비, 투자 및 배당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내유보를 과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내유보 과세는 도입되기 전까지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도입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정부가 사내유보 과세를 도입한 배경은 최근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동안 축적된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사내유보 과세를 도입하기 전에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많은 혜택을 본 만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내유보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이론적 문제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였다.

이렇게 외관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론을 펼치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보거나 개선안을 모색하는데까지는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김우철(2014)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과세대상기업과 세수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사내유보과세 방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기술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우철(2014)은 재무자료를 이용한 당기순이익에 기반을 두고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하였고 과세대상기업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사내유보과세가 의도대로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혹은 배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대상기업을 확인하고 이들의 세부담을 추정해봐야 한다. 본 논문은 앞선 김우철(2014)의 연구와는 달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연도소득 추정치를 이용하여 기업별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내유보과세가 실행될 경우 과세대상 기업 수나 세부담 면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은 사내유보 과세의 실효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세부담 추정뿐 아니라 세부담 추정치를 기초자료로 하여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효성 평가는 사내유보과세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동 제도의 시행효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앞선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사내유보 과세제도 도입배경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사내유보 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사내유보 과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Ⅱ. 사내유보 과세제도 도입배경 및 논란

1. 사내유보 과세제도 도입배경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이었으며, 이후 2012년 추미애 의원실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2013년 이인영 의원실에서 기업의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2011년 이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안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여 발표하였고,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사내유보 과세정책의 도입배경은 MB정부의 성장우선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 등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기대하였으나, 저성장의 기조가 장기화되고, 기업의 소득이 투자, 배당 및 인건비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쌓여있어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문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이익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한다.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한 경우 외부감사대상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동일 기간 동안 약 604조원에서 약 875조원으로 약 45%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유보금액이 약 52조원에서

약 59조원으로 약 16% 증가한 것에 비해 약 30%p 큰 것이다.¹⁾ 기업규모별로 2010년에서 2013년 사내유보금 증가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 1> 사내유보금 증가추이

(단위 : 십억원)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4,040개)	603,658	779,242	834,952	874,837
중소기업(15,358개)	51,857	57,040	60,471	59,902
총합계	655,515	836,282	895,423	934,739

자료 : KIS-Value상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이익잉여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감사대상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최근 4년간 약 271조원, 45%가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동 기간 동안의 임금상승율은 1%에 불과하였으며, 가계소득 증가율 또한 2%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기업의 소득이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증대 또는 기타 다른 산업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기업의 유보금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소득이 기타 중소기업 및 가계소득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대기업 내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경제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된다. 정부가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사내유보 과세제도의 도입배경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및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소득 중 배당, 투자 및 임금 등으로 가계에 흘러들어가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자금으로 남아 있는 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소득의 유보를 막고, 기업소득을 가계로 순환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경제의 선순환을 막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보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 KIS-Value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자료가 입수가 가능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이며, 대기업 4,040개, 중소기업 15,358개를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이다.

2. 사내유보 과세제도에 대한 논란

사내유보과세제도의 도입이 예고된 후 사내유보과세제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윤경(2014)과 김우철(2014)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윤경(2014)은 정부에서 사내유보과세를 예고하자 이에 대응하여 개최된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사내유보과세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유보율을 국제적 비교해보면 오히려 낮은 편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사내유보를 하고 있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어느 정도의 유보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부적 시각에서 정할 수 없다.

둘째,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도 실제로 배당을 유도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내유보과세제도는 대체로 지나친 유보를 통해서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사내유보과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려는 우리의 과세제도와는 근본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내유보 과세는 경제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만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추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의 기업들에 비하여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율이 낮다. 따라서 기업들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김윤경(2014)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사내유보과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가 사내유보과세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창출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김윤경(2014)의 발표 외에도 동일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토론자들도 모두 유사한 논리로 사내유보과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황인태(2014)는 유보금 사용현황을 보면 오히려 기업의 유보금이 투자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사내유보과세를 통해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이는 개인 부를 하락시켜 소비를 감소시킬 우려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우철(2014)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근거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유보과세 대상을 식별하고 세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과세기업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내유보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기업은 전체 대기업을 29.4%정도가 과세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 기업이 평균 부담하는 세액은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과세되는 기업의 경우는 사내유보과세대상이 아닌 기업에 비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배당, 임금증가율 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발표한 사내유보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투자나 배당보다는 임금증가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서 임금증가에 대한 유인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의 과세안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명확한 과세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의 범위에 연구개발비나 해외투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세부담을 차별화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김우철(2014)의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게 된다. 첫째, 김우철(2014)은 세무자료가 아닌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기업을 식별하고 세수를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상 주식사항을 수작업하여 기업들의 세무자료를 이용한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²⁾. 둘째, 김우철(2014)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시켰으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국회예산정책처 2014)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2013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내유보과세에서도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현황을 이용하여 좀 더 정교한 세수효과분석을 하였다는 공헌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달리 사내유보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을 갖고 있다.

III.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1. 세부담 계산절차

본 논문에서는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 2010

-
- 2) 기업의 재무자료인 당기순이익과 세무자료인 사업연도소득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괴리로 인한 세무조정으로 발생하며, 본 연구의 표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3년간 당기순이익과 사업연도소득의 차이(BTD)의 절대값을 기업의 총자산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평균 16.3~158.2%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세무상의 소득과 회계상의 이익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자료를 이용한다. 즉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안대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을 경우 세부담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4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은 특정연도의 이상성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가. 과세대상 기업 선정

이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사내유보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을 ①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②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으로 제한하였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만을 표본을 삼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나머지 대기업들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내유보과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2014)에 의하면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에 대한 전체 세부담 분석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대기업 및 자기자본 500억원의 기업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기업당 평균 세부담 금액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연도별 세부담 금액의 범위가 대기업 및 자기자본 500억원의 기업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본 논문에서 사전적으로 약식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적으로 식별해본 결과 Kis-Value에서 2013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대기업 및 자본금 500억원 이상 해당하는 전체 1,887개 기업 중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 수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은 Kis-Value상 1,267개 기업 중 최저 165~최고 733개의 기업이 과세대상 기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과세대상 기업 수로 보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사내유보 과세안도 결과적으로는 이들 소속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즉 기업의 투자정체와 낮은 주주이익의 환원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경향³⁾으로 인하여 사내유보과세 도입안을 정부가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사내유보 과세의 핵심 분석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는 본 연구가 사내유보 과세로 인한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 과세로 인하여 가장 큰 이슈가 발생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세부담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표본의 선정과정은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

3) 이시연, 2014. “국내 대기업의 내부 자금 유보와 자산 구성 변화에 대한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금융연구원, 제23권 24호

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2013년 기간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6,617개 기업을 최초표본으로 선정하였고, 금융업 및 보험업종의 332개와 공기업 319개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상 주식자료에 법인세부담액이 공시되지 않거나 0보다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2,45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계산하였다.⁴⁾

〈표 2〉 기초표본선정과정

	2010	2011	2012	2013	합계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1,512	1,740	1,680	1,685	6,617
금융업 및 보험업 표본제외	(47)	(99)	(87)	(83)	(316)
공기업 표본제외	(42)	(60)	(54)	(68)	(224)
법인세부담액의 자료가 없는 표본제외	(856)	(969)	(902)	(896)	(3,623)
합 계	567	612	637	638	2,454

나. 세부담 계산식과 변수측정

정부의 사내유보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세부담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표 3〉 사내유보 과세방법

사내유보 과세표준(A)=Min(①, ②)	
①	[당기소득×기준율 α (60~80%)]-(투자자산취득액+임금증가액+배당액+상생협력기금 출연금)
②	[당기소득×기준율 β (20~40%)]-(임금증가액+배당액+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사내유보과세 납부세액(B)=A×10%	
(단, 과세표준 기준미달액(기준초과액) 차기이월 가능)	

기업은 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식 ①과 식 ②를 통하여 도출된 납부세액 중 적은 값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도입시 선택한 과세방법은 최소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사내유보 과세의 세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⁵⁾, 세무상 이월 결손금, 투자자산의 취득액, 직원의 임금 증가액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 4)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수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주석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자료가 없는 경우 법인세부담액(±추납액, 환급액)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역산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 5)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기업의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팔호안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라고 하였으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는 지분법이익 또는 손실이 포함되므로 기업의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내유보 과세의 세부담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및 측정은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당기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⁶⁾, 법인세부담액 및 상법상 이익준비금 등의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투자자산의 취득액은 투자자산 신규투자만을 고려할 경우 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의 취득액을 사용하였고, 대체투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의 취득액에서 관련자산의 처분액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용하였다. 임금증가액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임원상여금을 제외한 급료및임금과 상여금항목의 당기분에서 전기분을 차감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배당액은 현금배당액만을 고려하였으며, 산업자원통상부의 상생협력기금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에서 차감하였다.

<표 4> 사내유보과세 세부담 분석 변수 측정치

구 분	구체적 항목
당기소득 = ㉑ - ㉒ - ㉓ - ㉔	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주식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 주식상 법인세부담액을 이용하여 역산하여 도출 ㉒ 세무상 이월결손금 - 주식상 세무상 이월결손금 전기분 ㉓ 법인세부담액 - 주식상 법인세부담액(±추가납부액·환급액) ㉔ 상법상 이익준비금 및 법정적립금
투자자산 신규취득액 ⁷⁾ = ㉕ 또는 ㉖	㉕ 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의 취득액 또는 ㉖ 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의 취득액 - 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의 처분액 -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임금증가액 = ㉗ - ㉘	㉗ 당기 인건비 금액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급료및임금, 상여금 항목 ㉘ 전기 인건비 금액
배당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산업자원통상부의 2011~2013년 기간동안 기금출연한 16개 기업의 기금액 반영(2013년 기준)

6) 본 연구는 주식상 법인세부담액을 이용하여 역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았다.

7) 김권중·김진선(2006)에서는 투자자산을 신규투자자와 대체투자자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의 취득액에서 처분액과 관련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규투자, 처분액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한 금액을 대체투자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신규

다만,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재무제표상 주식에 공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식에 공시되는 경우가 매우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회계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부담액을 역산하여 도출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은 아래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2012년 이후 법인세를 체계가 2단계 누진세율체제에서 3단계 누진세율체제로 변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역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였다.

〈표 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방법

구 분	2010~2011년	2012년~2013년
법인세 부담액 계산구조	$TAX = \{(\widehat{Tl}_i - TI_0) \times t_1 + TI_0 \times t_0\} \times 1.19$	$TAX = \{(\widehat{Tl}_i - TI_1) \times t_2 + (TI_1 - TI_0) \times t_1 + TI_0 \times t_0\} \times 1.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therefore \widehat{Tl}_i = [\{(TAX \div 1.1) - TI_0 \times t_0\} \div t_1] + TI_0$	$\therefore \widehat{Tl}_i = [\{(TAX \div 1.1) - (TI_0 \times t_0) - (TI_1 \times t_1)\} \div t_2] + TI_1$

단, TAX : 주식상 법인세 부담액(±추가납부액·환급액)

TI₁, TI₀ : 법인세율이 구분되는 과세표준 금액

t₀ :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

t₁, t₂ : 중간 또는 높은 단계의 법인세율¹⁰⁾

다. 세부담 계산 시나리오

이번 세제개편안에 있는 사내유보과세 도입안에서는 당기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율 α 와 β , 투자자산의 취득액 및 종업원의 임금증가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향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율을 가장 낮은 비율,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산의 신규 취득액 역시 대체투자를 포함한 투자금액과 대체투자를 제외한 신규투자금액을 구분하여 각 세수효과를 도출하였다¹¹⁾. 이러한 각 시나리오는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것과

투자과 대체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8) 박승식외(2006)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으로 201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3단계의 법인세율체제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9)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것이다.

10) <표> 법인세율 연혁

구 분	연혁/현행			
	2008	2009	2010~2011	2012~
2억원 이하	13%	11%	10%	10%
2~200억원 이하	25%	22%	22%	20%
200억원 초과				22%

11)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나, 현행 시행령(2015.7.15.일자)에서는 α 는 80%,

같은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6〉 세부담 계산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요소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V
최저 기준율 $\alpha : 60\%$, $\beta : 20\%$	○	○		
최고 기준율 $\alpha : 80\%$, $\beta : 40\%$			○	○
신규투자 및 대체투자	○		○	
신규투자		○		○

〈표 6〉을 보면 시나리오 I 은 가장 세부담이 작게 나타나게 되며, 시나리오 IV는 가장 세부담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시나리오 I 은 가장 낮은 기준율(20% 또는 60%)을 적용하고, 대체투자분을 포함한 투자액을 차감하였기 때문이며, 시나리오 IV는 가장 높은 기준율(40% 또는 80%)을 적용하고 신규투자액만을 차감하였기 때문이다.

2. 과세대상기업들의 사내유보 세부담 분석

가. 세부담 추정 결과

아래의 〈표 7〉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수를 측정한 후 4가지 시나리오별로 사내유보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에서 세부담 금액(A)과 과세대상 기업 수를 보면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I 에서는 4년간 584개 기업·연도에 총 7,130억원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1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되는 반면에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 IV에서는 4년간 1,212개 기업·연도에서 총 2조8천7백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23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평균 세부담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기준율을 낮게 설정하고, 투자자산 취득액을 전액 포함하는 신규투자자과 대체투자자를 차감하는 시나리오 I 인 경우 기업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면서 세수효과 역시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시나리오 III이 시나리오 II보다 세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II는 최저기준율을 적용하는 대신 처분액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신규투자액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¹²⁾

β 는 30%의 기준율을 과세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II와 III사이의 세수효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최저기준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투자자산 취득액에서 처분액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수가 증가하게 된다.

〈표 7〉 시나리오별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 부담 추정금액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0~2014년 누적 세 부담과 평균 세 부담		
					총금액	기업수	평균
					(단위 : 십억원)		
세 부담 금액(A)	시나리오 I	163	241	144	165	584	1.22
	시나리오 II	222	294	227	238	887	1.11
	시나리오 III	484	604	393	396	820	2.29
	시나리오 IV	704	776	658	733	1,212	2.37
세 부담비 중(B) = (세 부담 금액 / 사업연도소득) *100	시나리오 I	0.43	0.65	0.46	0.35	54.02	0.86
	시나리오 II	0.58	0.80	0.72	0.50	82.05	0.78
	시나리오 III	1.26	1.64	1.25	0.84	75.86	1.61
	시나리오 IV	1.84	2.11	2.09	1.55	112.12	1.66

또한 <표 7>의 세부담 비중(B)에서는 추정된 세부담이 기업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과세로 인한 유효세율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I에서는 4년간 평균 0.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IV에서는 평균 1.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략 사내유보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율이 이 정도 비율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평균적으로 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이 적어보일 수 있지만, 기업이 세법상 소득이 충분히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배당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부 기업들의 세부담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정책보다 일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매우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래의 <표 8>에서는 시나리오별 세부담 추정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8>에서 보면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의 중위값은 평균의 1/10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I에서는 최소 세부담은 9만원이며 최대 세부담은 약 259억원이며,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IV는 최소 세부담은 10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대 세부담은 599억원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2013년을 기준으로 평균 세부담과 중위값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I은 각 10.3억원, 약 1억원으로 추정되며, 시나리오IV은 각 21.1억원, 약 2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평균값과 중간값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2011년도에 사내유보 과세로 인한 세부담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하여 2011년도에 사업연도소득이 0보다 높은 기업들 중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득이 매우 적거나 투자확대, 인건비 증가 및 배당을 시행한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매우 높은 비중으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내유보 과세도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은 매우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사내유보 과세로 인하여 과세대상 기업들간 최소로 부담하는 세부담과 최대로 부담하는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사내유보 과세를 도입하기 전 기업들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제도 도입 후의 영향 및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세부담의 변화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살펴본 연구결과는 대부분 배수진·심태섭(2011)의 연구와 같이 세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조세순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lm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법인세율의 증가로 인하여 보고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납세자에게 다른 상황변수가 있을 수 있고, 위험선호도, 공정성 및 소득획득방법 등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원석·윤성만(2014)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경제사회여건 등에 따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법인세율 조정을 통한 정책은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그 효과도 광범위해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고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윤태화·심현욱, 2008), 사내유보 과세 도입이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확대 등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8〉 시나리오별 사내유보 과세대상기업의 세부담 금액 기술통계량

구 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제1사 분위수	중위수	제3사 분위수	최대값	합계
시나리오 I	2010	135	12.1	35.9	0.0013	0.2905	1.2748	4.4951	253.4	1,633
	2011	145	16.6	64.4	0.0004	0.3728	1.2808	4.2331	450.5	2,413
	2012	144	10.0	28.2	0.0012	0.2628	1.0325	3.8775	193.5	1,435
	2013	160	10.3	30.7	0.0009	0.2571	0.9779	4.3013	258.8	1,647
시나리오 II	2010	209	10.6	31.0	0.0013	0.3000	1.0602	4.5086	253.4	2,220
	2011	203	14.5	58.1	0.0004	0.3728	1.1210	4.8631	450.5	2,941
	2012	222	10.2	27.6	0.0012	0.2729	1.0626	4.8115	193.5	2,273
	2013	253	9.4	29.1	0.0009	0.2474	1.1142	4.6386	258.8	2,376
시나리오 III	2010	197	24.6	81.1	0.0054	0.6019	2.5837	10.1757	686.1	4,838
	2011	189	31.9	106.1	0.0007	0.7566	2.5485	8.9209	901.2	6,038
	2012	213	18.4	61.7	0.0040	0.4569	1.7612	7.6343	542.9	3,928
	2013	221	17.9	56.1	0.0010	0.4431	1.8477	7.5148	565.9	3,955
시나리오 IV	2010	291	24.2	77.4	0.0054	0.6398	2.5837	11.3547	686.1	7,044
	2011	272	28.5	104.0	0.0007	0.7658	2.6951	10.2827	901.2	7,759
	2012	302	21.8	71.2	0.0040	0.5271	1.9882	10.5731	754.1	6,584
	2013	347	21.1	66.6	0.0010	0.5453	2.0134	9.4824	599.0	7,325

(단위 : 억원)

나. 과세대상 기업들의 업종별 그룹별 분포

본 연구의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들의 구성은 아래의 <표 9>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9>패널 A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사내유보 과세대상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이 높다.

<표 9> 과세대상 기업의 업종별 그룹별 분포

패널A : 업종별 구성									
구 분	I	II	III	IV	구 분	I	II	III	IV
농·어업	2	2	2	3	출판영상방송	19	30	28	43
제조	29	71	42	101	부동산임대	18	19	20	21
전기가스수도	2	6	4	12	전문과학기술	20	22	22	25
하수폐기물	3	8	7	8	사업시설관리	6	7	8	9
건설	17	19	20	24	교육서비스	0	6	1	1
도소매	25	36	42	55	예술스포츠	5	3	6	9
운수	11	19	14	23	협회단체	0	0	1	3
숙박음식점	3	5	4	10	계	160	253	221	347

패널B : 그룹별 전체 기업수								
NO	그룹명	기업수	NO	그룹명	기업수	NO	그룹명	기업수
1	삼성	30	17	금호아시아나	12	33	한라	8
2	현대자동차	35	18	동부	9	34	홈플러스	2
3	SK	48	19	대림	8	35	KT&G	5
4	LG	31	20	부영	3	36	한국타이어	7
5	롯데	32	21	현대	9	37	태광	16
6	포스코	22	22	OCI	12	38	대성	13
7	현대중공업	14	23	S-Oil	1	39	현대산업개발	5
8	지에스	27	24	현대백화점	23	40	코닝정밀소재	2
9	한진	23	25	효성	13	41	세아	13
10	한화	19	26	대우건설	2	42	이랜드	7
11	케이티	21	27	동국제강	7	43	태영	14
12	두산	9	28	영풍	13	44	하이트진로	4
13	신세계	15	29	코오롱	13	45	아모레퍼시픽	8
14	CJ	29	30	한국지엠	1	46	삼천리	4
15	LS	25	31	한진중공업	4	47	한솔	10
16	대우조선해양	5	32	KCC	5			

〈표 9〉 과세대상 기업의 업종별 그룹별 분포 (계속)

패널C : 그룹별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수									
구 분	I	II	III	IV	구 분	I	II	III	IV
삼성	9	13	12	17	효성	5	7	5	8
현대자동차	6	15	11	21	대우건설	1	2	1	2
SK	9	15	13	19	동국제강	2	3	2	3
LG	6	10	9	13	영풍	1	7	4	9
롯데	6	11	12	21	코오롱	4	6	5	7
포스코	6	7	7	9	한국지엠	1	1	1	1
현대중공업	1	5	2	6	한진중공업	0	0	0	2
지에스	7	10	7	15	KCC	1	2	2	4
한진	7	9	10	13	한라	2	3	2	3
한화	8	10	13	13	홈플러스	0	1	0	1
케이티	4	4	8	10	KT&G	3	3	3	4
두산	2	4	3	5	한국타이어	2	4	3	4
신세계	1	4	3	7	태광	7	9	7	11
CJ	8	10	10	13	대성	4	6	7	10
LS	3	10	6	15	현대산업개발	1	1	1	1
대우조선해양	1	1	1	1	코닝정밀소재	0	1	0	1
금호아시아나	3	7	4	7	세아	5	5	6	8
동부	5	6	5	6	이랜드	1	3	3	4
대림	2	2	2	3	태영	4	7	5	8
부영	1	1	1	1	하이트진로	2	2	2	2
현대	2	3	2	3	아모레퍼시픽	0	0	1	3
OCI	4	6	4	7	삼천리	1	1	1	2
S-Oil	0	0	0	0	한솔	2	3	2	6
현대백화점	10	13	13	18	계	160	253	221	347

그리고 이러한 비중은 전체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들의 업종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사내유보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특정한 업종에 집중되어 과세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표 9> 패널 B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그룹별 과세대상기업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많은 기업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롯데그룹과 삼성그룹이었다. <표 9> 패널B의 통계를 보면 대체로 특정한 대기업집단에서 집중적으로 과세대상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표 10>에서는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IV하에서 그룹별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수를 나타내는 표로써, 10대 그룹 소속 기업 중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은 38.6~4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그룹의 비중은 74.9~81.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그룹별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수

(단위 : 기업수)

구 분	2010		2011		2012		2013	
	I	IV	I	IV	I	IV	I	IV
10대 그룹	54 (40.0)	120 (41.2)	56 (38.6)	109 (40.1)	57 (39.6)	124 (41.1)	65 (40.6)	147 (42.4)
30대 그룹	105 (77.8)	218 (74.9)	118 (81.4)	217 (79.8)	117 (81.3)	247 (81.8)	125 (78.1)	273 (78.7)
전체	135 (100)	291 (100)	145 (100)	272 (100)	144 (100)	302 (100)	160 (100)	347 (100)

다. 업종별, 그룹별 세부담 비교

아래의 <표 11>은 업종별 사내유보 과세대상 세부담 금액을 나타낸 표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예술스포츠업 등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았다. 제조업은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IV를 살펴보았을 때, 세부담이 478.2~4,035.2억원이었으며 특히, 2013년에 시나리오 I 에서 세부담이 가장 낮은 478.2억원과 시나리오IV에서 세부담이 가장 높은 4,035.2억원이 동시에 관찰된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2013년에 제조업에 서는 신규투자보다는 대체투자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건설업은 세부담이 194.4~1,083.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은 세부담이 129.2~1,06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업종별 사내유보과세 세부담 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I	IV	I	IV	I	IV	I	IV
농·어업	0.0	0.0	0.0	0.2	40.2	80.9	52.0	105.2
제조	620.1	3,693.7	619.7	3,509.8	582.7	4,001.1	478.2	4,035.2
전기가스수도	22.1	118.6	1.5	26.8	0.2	47.5	1.7	81.1
하수폐기물	0.2	2.8	1.4	4.8	5.9	12.4	22.9	33.0
건설	197.0	579.8	571.4	1,083.0	194.4	581.6	343.4	756.9
도소매	129.2	936.8	548.0	1,032.4	231.5	784.7	158.3	1,062.1
운수	14.1	39.1	19.0	139.1	16.2	196.3	26.3	188.5
숙박음식점	4.1	43.0	11.4	51.3	45.0	77.9	149.0	197.5
출판영상방송	25.5	185.0	16.6	100.9	54.9	212.4	44.9	192.5
부동산임대	6.3	32.9	33.7	60.4	17.3	38.2	7.1	25.3
전문과학기술	48.0	265.3	125.9	825.2	52.8	163.7	353.0	622.5
사업시설관리	33.9	45.0	8.3	13.1	14.0	25.3	7.5	16.4
교육서비스	0.0	0.5	0.0	0.0	0.0	0.0	0.0	0.4
예술스포츠	532.4	1,100.3	455.9	912.1	179.1	360.5	2.9	6.8
협회단체	0.0	1.6	0.0	0.0	0.9	1.0	0.0	2.1

아래의 <표 12>에서는 그룹별 사내유보 과세대상의 세부담 금액을 보여주는 표로써, 과세대상 기업 중 10대 그룹 소속 기업은 34.4~6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그룹별 사내유보과세 세부담 효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I	IV	I	IV	I	IV	I	IV
10대 그룹	856 (52.4)	4,556 (64.7)	829 (34.4)	4,267 (55.0)	856 (59.7)	4,598 (69.8)	955 (58.0)	5,002 (68.3)
30대 그룹	1,515 (92.8)	6,304 (89.5)	2,352 (97.5)	7,250 (93.4)	1,293 (90.1)	5,983 (90.9)	1,419 (86.2)	6,606 (90.2)
전체	1,633 (100)	7,044 (100)	2,413 (100)	7,759 (100)	1,435 (100)	6,584 (100)	1,647 (100)	7,325 (100)

특히, 당기소득에 최고기준율을 적용하고 신규투자만을 고려할 경우 10대 그룹의 비중은 5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 그룹의 비중은 86.2~97.5%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내유보 과세가 도입된다면 30대 그룹이내의 기업들이 세부담을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라.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의 순이익과 현금흐름

아래의 <표 13>은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의 순이익과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표로써, 패널A는 순이익의 흐름, 패널B는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시나리오별로 46,228~157,577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및단기 금융자산의 증감액은 11,039~57,090십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의 순이익과 현금의 흐름

(단위 : 십억원, %)

패널 A : 순이익의 흐름

구 분	2010~2013년 누적금액				2010년 대비 증감율			
	I	II	III	IV	I	II	III	IV
순이익	46,228	89,316	79,840	157,577	-23.2	-15.9	-17.0	-11.0
현금배당	3,493	6,708	7,352	15,342	-0.4	-0.4	-0.1	-0.2
당좌자산 증감	72,528	123,522	124,884	207,997	0.8	0.7	0.8	0.7
(현금·단기금융자산증감)	11,039	34,284	24,905	57,090	135.4	229.8	87.5	152.6
유형자산 증감	15,179	88,544	42,546	146,573	3.5	2.3	2.7	1.9
투자자산 증감	56,486	108,176	110,137	171,480	164.6	106.9	119.0	76.2
(지분법주식 증감)	44,204	83,618	78,318	116,733	2.3	4.1	1.8	3.0

패널 B : 현금의 흐름

구 분	2010~2013년 누적금액				2010년 대비 증감율			
	I	II	III	IV	I	II	III	IV
영업현금흐름	20,377	84,199	43,001	152,109	-5.1	-3.3	-3.5	-2.3
현금배당	3,493	6,708	7,352	15,342	-0.4	-0.4	-0.1	-0.2
단기금융자산 순취득	5,781	15,641	8,909	33,637	109.5	67.6	124.8	78.8
유·무형·리스자산 순취득	9,452	41,318	18,709	74,241	7.0	4.7	5.1	-0.9
장기금융자산 순취득	-825	5,433	1,828	3,877	561.0	258.7	450.3	203.2
지분법주식 순취득	9,106	22,480	16,962	30,886	-13.0	-8.0	-9.5	-5.3

이를 통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현금및단기금융자산에 소요되는 금액이 23.8~3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의 증감액은 15,179~146,573십억원이었으며, 지분법평가적용 주식의 증감액은 44,203~116,733십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3년의 순이익과 현금흐름 항목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현금및단기금융자산의 증감액과 투자자산의 증감액이 각 87.5~229.8%, 76.2~164.6%으로 매우 높은 증감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현금흐름은 시나리오별로 2010년 대비 -2.3~-5.1%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기금융자산 순취득액과 장기금융자산 순취득액의 높은 증가율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하여 과세대상기업의 2014년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10년 대비 과세대상 기업의 순이익은 감소한 반면에 현금및단기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금의 흐름은 2010년 대비 현금흐름은 감소한 반면에 단기 및 장기금융자산의 순취득액이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최근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들이 단기 및 장기금융자산을 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는 있는 것으로 관찰된 것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시장상황 및 부채상환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V. 사내유보 과세의 실효성

1. 실효성 평가

가. 세부담의 적정성

사내유보과세의 목표는 세수확보가 아닌 각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대로 사내유보과세를 피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나 배당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앞선 세부담 분석에서 보면 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사내유보과세 대상인 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347개 기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기업들의 세부담 평균은 10억원 정도인데 이 세부담이 이들 기업의 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소득의 약 20%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자, 인건비 및 배당을 해야 한다.

사내유보 과세의 세부담 추정 결과를 보면 극히 일부 기업에게 대부분의 세부담이 편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선 <표 8>에서의 세부담 추정치의 분포를 보면 2013년 시나리

오Ⅳ에서 과세대상 기업들의 평균 세 부담은 21억원이지만 중간값은 불과 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세 부담 추정치도 10억원에 미치지 않지만 세 부담이 가장 큰 기업은 59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세 부담이 극히 일부 기업에 편중된 상황을 감안하면 사내유보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내유보과세는 과세표준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배당을 해야 한다. 즉, 과세대상 기업들이 평균 10억원 정도의 사내유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추가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사내유보과세 도입은 향후 일부 기업들에게 높은 세 부담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겠지만, 정부에서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인식하여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나. 다양한 과세회피 수단의 존재

(1) 기업 간 거래를 통한 회피

사내유보과세는 대체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사내유보과세는 집단별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과세 여부와 세 부담을 산출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세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여러 실증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 주로 특수관계자거래를 이용한다. 따라서 사내유보과세에 대해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이다. 즉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서 결손기업으로 소득을 이전시켜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해나갈 가능성이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부당계산부인 규정을 통해서 부적절한 소득이전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나 일감몰아주기 사례 등을 보면 대기업집단은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득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내유보과세가 시행되면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소득이전 유인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사내유보과세는 소득이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 기업 간 투자기출 이전을 통해서도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유보 과세가 예상되는 기업의 투자기출을 사내유보 과세에서 여유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투자 이전은 소득 이전과는 달리 세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손쉽게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세가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합병이나 대주주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과세를 회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이 다양한 과세회피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사내유보과세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

아래의 <표 14>에서는 과세대상 기업 중 관계회사 거래 비중 자료를 Kis-Value에서 입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한 평균 매출액 비중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시나리오별로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40% 내외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세대상기업들의 매출액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대체로 높은 관계회사 거래비중을 보여준다는 것으로서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내부거래를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총매출액에서 관계회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총매출 대비 관계회사매출 비중(%)	표본규모
시나리오 I	44.83	92
시나리오 II	41.13	128
시나리오 III	39.72	122
시나리오 IV	37.62	167

(2) 기간별 이전거래를 통한 회피

사내유보과세는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되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만 과세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간별 이전거래가 예상된다.

기업들이 과세제도 변화에 맞추어 기간별 소득을 이전시킨다는 증거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이제는 일반화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choles et al., 2014). 우선 과세대상기업들은 소득이전을 통해서 사내유보과세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최초 시행 이후 소득을 시행 이전으로 조기에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일몰시한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일몰 시한 이후로 이연시킴으로써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임금이나 투자지출, 배당 등도 기간이전이 가능하다. 즉 최초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투자나 배당 등을 시행 이후로 이연시키거나 일몰시한 이후에 예정된 투자나 배당 등을 일몰 시한 이전으로 이전시키는 거래가 가능하다.

다. 배당증가의 내수 증대 효과

사내유보과세는 기업들의 투자나 임금뿐만 아니라 배당을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배당증가가 다시 재투자나 소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국내 개인주주들에게 국한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주식의 상당수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 관계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사내유보 과세 대상의 핵심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비록 기업들이 배당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대한대로 재투자나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김윤경(2014)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아래의 <표 15>는 본 논문의 과세대상 기업 중 최대주주지분율은 Kis-Value에서 전체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주주와 개인주주는 TS-2000에서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상장기업들만 대상으로 주주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해보면 과세대상 기업들이 만일 사내유보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증가시켰을 때 정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내수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최대주주나 외국인주주들이 아닌 개인주주들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평균적으로 실제 배당의 40% 정도만이 개인주주들에게 지급되어 내수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배당지급이 내수증가로 이어지는 가장 낙관적인 생각 하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은 전부 내수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를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외국인주주 비율은 15~2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주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선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사내유보 과세로 인한 세부담은 일부 대기업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들 대기업들은 평균보다 외국인지분율이 훨씬 높다. 따라서 만일 사내유보 과세 대상 기업들이 배당증가를 통해서 과세를 회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상당 부분은 국내가 아닌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표 15> 사내유보 과세대상기업의 주주구성현황

(단위 : %)

연도	시나리오 I			시나리오Ⅳ		
	최대주주	외국인주주	개인주주	최대주주	외국인주주	개인주주
2010	67.00	15.08	36.86	60.07	16.14	37.83
2011	66.97	22.05	43.06	62.43	17.40	38.27
2012	71.25	17.21	40.40	66.57	16.79	38.44
2013	70.73	16.39	37.66	63.66	14.81	37.51

아래의 <표 16>은 2013년 시나리오Ⅳ 하에서 상장기업 중 가장 세부담이 큰 것으로 추정된 5대 기업의 주주구성비율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일단 이들 5대 기업의 사내유보 과세 세부담 추정치는 2,131억원으로서 앞선 <표 7>에서 2013년 시나리오Ⅳ 하에서 모든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추정치 합계인 7,330억원의 30%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내유보 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극히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들의 외국인지분율을 구해보면 대체로 앞선 <표 15>에서 보았던 과세대상 기업의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5개 기업의 세부담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외국인지분율은 41.87%이다. 이러한 가중평균 지분율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이들 기업이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증가시키게 되면 증가되는 배당금의 41.87%가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내유보 과세의 의도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어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6> 세부담 추정치 상위 5대 기업의 주주구성분포

회사명	세부담 ^a (억원)	지분율			
		최대주주	기관투자가	외국인	계
현대자동차	599	26.00%	7.60%	44.60%	78.20%
효성	566	30.30%	0.00%	30.80%	61.10%
삼성전자	371	17.70%	15.30%	54.10%	87.10%
현대모비스	357	30.20%	7.50%	49.10%	86.80%
삼성중공업	238	24.30%	5.90%	31.40%	61.60%
합계/가중평균 ^b	2131	26.21%	6.72%	41.87%	74.79%

a. 2013년 시나리오Ⅳ하에서의 세부담 추정치

b. 세부담 추정치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지분율임.

라. 국외소득과 국외투자의 구분

현재 정부가 제시한 사내유보과세안은 사업연도소득에서 국외소득을 제외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지출에서 해외투자지출을 제외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일단 사내유보 과세의 취지상 해외투자지출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연도소득의 개념도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해외투자를 투자지출에서 제외하면서 사업연도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외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져서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원천소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과세회피유인이 생긴다.

2. 기업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한 과세제도의 모색

기업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투자보다는 사내유보를 증가시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고 여기에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회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유보 과세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할 것을 유인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위험회피성향을 감소시켜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보완

사내유보과세의 도입은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부정적인 유인(negative incentive)이며, 현행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는 긍정적인 유인(positive incentive)으로 볼 수 있다. 투자 및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유인과 부정적인 유인 중 어떤 유인이 효과적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현행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유찬·김진수(2003)는 법인세를 인하보다 구체적인 조세지원이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윤태화·심현욱(2008)도 일반적인 세율인하보다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규언외(2015)는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과 그를 통한 투자 지출의 확대가 자본시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현행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혜대상을 구분하거나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차별적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조세지원제도가 정책적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결손금 소급공제의 확대

Scholes et al.(2014)에서는 누진적인 세율체계가 납세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누진적인 세율체계 하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 이익증가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보다 미래 이익 감소시에 줄어드는 세금이 더 적어지게 되므로 위험한 투자안일수록 세후 기대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손에 대해서 소급공제보다는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때 곧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손실이 날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세율체계를 누진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리

고 이러한 누진적 세율체계는 투자가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준규(2009)에서도 우리나라 결손금 체제하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 및 사업에서 결손금을 공제하게 하는 조세회피유인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에 소급공제를 확대하여 일반기업들도 결손에 대해서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은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다도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급공제를 받는다면 이는 세후 투자손실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다.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보완

동업기업(파트너십)은 다양한 동기를 갖는 사업주체들이 모여서 위험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이다. 특히 동업기업에서는 자유로운 이익과 손실 분배 규칙을 이용하여 사업주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세율이 다른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감해서 효과적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초기 손실에 대해서 한계세율이 높은 동업자가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초기 위험부담을 낮추게 된다. 동업기업에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나려면 세법에서 동업자 간의 자유로운 손익분배 기준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제도에서는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이 같도록 하는 등의 제약이 따라서 동업자 간의 자유로운 이익과 손실의 배분이 어렵다. 만일 지금보다 동업기업에서 보다 자유롭게 동업자의 배분을 인정해줄 수 있다면 동업기업을 통하여 투자가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맺음말

최근 정부는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키고자 사내유보과세 도입을 제안하였고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사내유보 과세는 첨예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인하 등으로 많은 혜택을 본 만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내유보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이론적 문제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였다. 도입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내유보과세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연도소득 추정치를 이용하여 4가지의 시나리오별로 각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시나리오별 기업의 세부담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I에서는 4년간 584개 기업·연도에 총 7,130억원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1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 IV에서는 4년간 1,212개 기업·연도에서 총 2조8천7백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23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평균 세부담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과세대상 기업 중 10대 그룹의 비중이 38.6~4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히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업종별로 편중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순이익이나 영업현금흐름의 증가폭보다 단기 및 장기금융상품 등의 증가폭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과세대상기업들이 유보된 소득을 현금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을 분석하였으며, 크게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 평가와 기업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을 살펴본 결과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들이 시나리오 I 하에서 평균 10억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사내유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추가배당을 해야 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관계회사의 거래 또는 기간별 소득이전 등을 통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최대주주, 기관주주 및 외국인주주 등의 지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으로 기업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기소득에 국외소득을 포함한다면 국외투자를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국내소득을 국외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보완하여 자유롭게 동업자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면 동업기업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내유보과세 도입시 기업들의 세무상 자료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기업들의 세부담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세대상 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내유보과세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 평가를 하여, 사내유보과세제도의 도입 자체

에 대한 찬반보다는 동 제도의 시행효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기업의 과거의 세무 및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제도 도입이 후 기업의 세부담 및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정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갖고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1.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 김권중·김진선. 2006. “Ohlson 모형에서의 ‘기타정보’의 역할 : 영업고정자산 신규투자를 중심으로”. 증권학회지 제35권 제4호.
- 김우철. 2014. “기업유보금 과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2014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유찬·김진수. 2003.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의 인하는 필요한가?”. 세무학연구 제20권 제3호 : 85-107.
- 김윤경. 2014.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발표논문.
- 박승식·장지인·정길채·배성태. 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 박종규. 2014.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 투자범위 설정의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금융연구원. 제23권 제30호.
- 배수진·심태섭. 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윤태화·심현욱. 2008.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 이시연. 2014. “국내 대기업의 내부 자금 유보와 자산 구성 변화에 대한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금융연구원. 제23권 제24호.
- 이준규. 2009. “결손공제제한과 조세회피방지”.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 정규언·오광욱·박재환. 2012. “연구개발 투자지출과 시장성과—자본시장 및 고용활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 최원석·윤성만. 2014.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수확보정책의 타당성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 황인태·강선민. 2014.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인가”. KERI 대외세미나 발표논문.
- FKI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기업 사내유보 과세검토에 대한 의견”.
- Alm, J., Sanchez, I., and De Juan, A. 1995.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in tax compliance*. Kyklos. The Accounting Review 66.
- Scholes, M.S., Wolfson M.A., Erickson M., Maydew E.L., and Shevlin T. 2014.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earson Prentice Hall, 5th.

Corporate Tax Burden and Characteristics of Taxation on Corporate Retained Earnings

Kiho Choi* · Yeyoung Moon**

—〈Abstract〉—

The new tax law which will be imposed to the reserve which remained in the corporate not been consumed as investment, salary, dividend has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ere controversies for and against the new tax. And the dispute for the detailed enforcement is still progressing. Despite of the active discussion, it is hard to find the research that analyzes the problem and seeks improvement proposal.

In this regards, We have predict the tax burden with 4 different scenario and evaluate the new tax in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zation for the expected tax burden, 584 companies will pay 713 billion(about 1 billion per company) for next 4years in Scenario 1, 1,21 companies will pay 2,870 billion(about 2.3 billion per company) for next 4years in Scenario 4.

The portion of the companies which affiliated to the 10 Group is 38.6~42.4%. But the phenomenon that bias to the type of business is not observed. Next, We have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We mainly have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and seeked the way for reducing the risk aversion.

According to the analyzation for the effectiveness, a company will pay 10 billion as new tax averagely. A company has to invest 10billion for the new business equipment or raise the salary for the employees same amounts not to be subject to the tax. But the solution is not to easy to execute. Also, companies will avoid the tax using the various methods like intercompany transaction. And even if companies pay much dividend, the income transfer effect would be insignificant due to the high share ratio of the foreign investors and institution investors. To reduce company's risk aversion and to encourage the investments, we suggest to extend the carry-back NOL, and to make up the partnership taxation to freely decide the ratio of income-loss distribution.

〈Key words〉 Taxation on Corporate retained earnings, Mutual investment restriction business groups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Primary Author

** Assistant Professor, Tax&Accounting Department, Baewha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